



호주 체류

영주 비자 소지자

영주(PR) 비자 소지자는 호주에 무기한 체류할 수 있지만, 호주를 출국후에는 영구비자로 가능한 여행기간(보통 5년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처:

- [VEVO](#) 서비스 이용. 혹은,
- 본인의 [ImmiAccount](#) 를 통해 본인의 비자 조건 확인.

영주 비자의 여행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시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다면, 본인에게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자 귀환 비자](#)'를 참고하세요.

임시 비자 소지자

방문 비자나 전자여행권(ETA) 소지자

호주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방문 비자나 ETA 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에 '추가 체류 불가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어떤 비자라도 신청하기 전에 이 조건의 면제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계획대로 호주를 떠날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 허가 기간, 비자 만료일과 비자 조건을 확인하여 합법적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 소지 비자의 세부조건은 [VEVO](#), [myVEVO app](#), 비자 허가서, 또는 [ImmiAccount](#)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TA 만료일과 조건은 [Check an ETA](#)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비자 신청시에는 그 비자 신청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브릿징 비자를 받음으로써, 합법적인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비자가 이미 만료된 경우 [My visa has expired](#) 를 참조하세요.

비자 조건

일할 수 없는 조건

방문 비자와 ETA 소지자는 호주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비자 체류 기간

기존 비자의 체류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체류 허가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호주에 있는 경우 비자는 중지 됩니다 비자의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호주를 떠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자가 중지 되기 전에 추가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람선을 타고 호주를 출국하고 귀환하는 경우, 체류 허용 기간 동안에는 호주를 출국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람선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추가 체류 금지 조건 (8503, 8534 및 8535 포함)

8503, 8534, 8535 비자 소지자가 계획대로 호주를 출국하지 못했으며 따로 비자 조건에 대한 면제가 없는 경우,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비자 만료 기간이 4 주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 [이 조건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승인되면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8531 (비자의 허용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체류할 수 없습니다.)

8531 비자 소지자가 일정대로 호주를 출국하지 못한 경우, 비자가 중단되기 전에 추가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8503 비자의 조건을 같이 적용 받는 경우에는 먼저 이 조건의 면제를 요청하세요.

여행 제한 정책으로 인해 계획한 대로 호주를 출국할 수 없는 이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이런 사정은 향후 비자나 스폰서십 신청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8558 (총 18 개월 중 12 개월 이상은 체류할 수 없습니다.)

계획대로 호주를 떠날 수 없었던 8558 의 조건의 비자 소지자가 12 개월을 **연속으로** 호주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중지 됩니다.

18 개월 중에서 12 개월의 **누적** 기간 동안 호주에 있었다면, 비자는 여전히 비자 만료일까지 유효할 것입니다.

호주 출국 전에 비자가 만료되면 추가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8503 비자의 조건을 같이 적용받는 경우에는 먼저 이 조건의 면제를 요청하세요.

비자 처리 준비

호주 체류를 위한 새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새 비자 옵션을 알아보고 [ImmiAccount](#)에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더 빨리 처리 되므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COVID-19로 인해 일부 비자 신청 절차 및 관련 서비스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기존의 서비스(예: 신체 검사 및 생체 인식 수집)이 심각하게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신청자들에게는 절차를 완료하고 요청드린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비자 신청 처리를 할 때는 이러한 서비스 장애도 함께 고려될 것입니다.

이런 절차 완료에 따르는 더 많은 시간을 요청하기 위해 따로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 비자 소지자

최신 정보 / 미디어 자료

- [코로나바이러스 기간 동안 보건 및 장애 관련 종사자 총원](#)
- [코로나바이러스와 임시 비자 소지자](#)
- [호주 주요 슈퍼마켓은 선반 재고 유지를 위해 유학생 직원들에게 일시적으로 더 긴 근무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노인 요양원의 심각한 직원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유학생 고용이 요구됩니다..](#)

정부는 COVID-19에 관련된 제한조치로 인해 비자 조건 맞추기가 불가능 했던 학생들의 경우에 수업 출석이나 온라인 학습 등을 통한 유연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의 학업이 끝나가고 있지만 호주를 떠날 수 없는 경우에는 방문 비자(서브클래스 600)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은 학생 비자 만료 전에 해야 합니다

본인의 과정이 '비학기' 중인 경우

코스가 '학기 중이 아닌 비학기'로 간주된다면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방학 기간이나 예정대로 과정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비학기'로 간주 됩니다.

연구 석사나 연구 박사 과정 이수중인 경우

박사 과정이나 연구 석사 과정을 시작했다면,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연기된 경우

과정이 연기 된 경우 2 주에 40 시간 이상 일할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 소지자를 위한 근로 시간의 임시적 완화

특정한 학생 비자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한시적으로 근로 조건이 완화되어 2 주일에 40 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호주 주민을 위한 필수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보건 분야 근로자, (간호학이나 의학 등의) 보건 관련 과정 등록자, 코비드 19 방역 관련해서 보건관계자를 지원하고 있는 사람
- 정식 슈퍼마켓에서 근무자 (이 임시 조치는 2020 년 5 월 1 일을 기해 중단할 예정입니다.)
- 승인 등록된 제공자나 연방 정부의 기금을 받는 노인 요양원의 근무자
- 등록된 국가 장애 보험 제도 단체의 근무자

[학생 비자 소지자를 위한 근로 시간의 임시적 완화](#)를 참조하세요.

학생 비자가 연장 가능할까요?

호주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학생 비자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 새 비자를 신청하십시오.

-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
- 학업을 마치기 위해 호주에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기존 학생 비자가 만료되기 6 주 전에 새 학생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학생 비자 신청 시에는 COVID-19 로 생긴 지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호주에서 학업이 끝나가고 있는 경우에는 방문 비자 (서브클래스 600)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은 학생 비자 만료 전에 해야 합니다

[방문 비자에 대한 상세 정보](#)

일부 서비스에 지장이 생겼고 비자 신청 절차와 관련해서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졌습니다. 신체 검사를 수행하는 해외 의료진, 영어 테스트 시설 및 생체 인식 수집 등의 경우도 여기 해당합니다. 따라서, 많은 신청자들이 비자 요건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절차를 완료하고 요청 받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현재의 비자가 만료되기 전 새 비자를 신청하면, 모든 조건이 구비되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브릿징 비자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주 학업 요건

내무부는 학업 형식 규정 수립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교육 제공자에게 연락하세요.

[유연한 운영을 위한 TEQSA 와 ASQA 의 공동 선언문](#)을 참조하세요.

여행 제한 조치로 인한 예외적 상황에 관련해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 학업을 받는 대학생들을 위한 전국 수칙](#)을 참조하세요.

내무부에 통지

집으로 돌아가거나 학업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 내무부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비자는 다른 비자 신청을 하거나 비자의 만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귀국을 하거나 학업을 연기하는 경우 비자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재정난을 겪는 경우

호주에서 생활하기 위해 가족 지원을 받거나 가능한 경우에는 시간제 근무를 하고, 또는 저축에 의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호주에서 지내는 동안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갖는 것이 학생 비자 유지의 조건이기 때문에 본래 거주지로 귀국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12 개월 이상 호주에서 생활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호주에서 모인 본인의 퇴직 연금을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 학생들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국제 교육부와 계속 연계해서 활동할 것입니다.

부족 기술군 단기 비자(서브 클래스 482) 혹은 임시 근로 (기술) 비자(서브클래스 457) 소지자

작업은 멈췄으나 해고되지 않은 임시 기술 부족군과 457 비자 소지자들은 비자가 그대로 유효하며, 사업체들은 보통 해왔던 대로 비자 연장 기회 갖게 될 것입니다.

비자 조건을 위반하거나 회사가 고용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도 사업체들은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만일 해고되어 현재 실직 상태라면, 60 일 이내에 다른 고용주를 찾거나 호주를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으면 유효한 비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호주 정부의 보건에 관련한 조언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보건, 노인 요양 또는 농업 등의 중요 분야에 고용되어 있는 임시 취업 비자 소지자는 [COVID-19 팬데믹 임시 활동 비자 \(서브클래스 408\) 호주 정부 승인 협정 \(Australian Government Endorsed Agreement Event /AGEE\) 관련 비자](#) 자격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비자 소지자

COVID-19 관련 중요 부문 (농업, 식품 가공, 보건, 요양원, 장애인 간병이나 아동 보호) 종사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호주에서 3 개월 또는 6 개월의 [지정](#)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 2 차 또는 제 3 차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VID-19 에 대응해서 호주 정부는 새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 농업, 보건, 노인 및 장애인 케어, 육아 등 중요 분야에 고용된 워홀러는 고용주 한 명과의 6 개월 근무제한에서 면제됩니다.

중요 부문에 근무하지만, 두번째나 세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한 3 개월이나 6 개월 기간의 지정 작업을 완수하지 못한 워홀러는 [COVID-19 팬데믹 활동 비자 \(서브클래스 408\) 호주 정부 승인 협정 \(AGEE\) 관련 비자](#)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취득하면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고국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새로운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나이 제한, 영어 능력, 건강, 성격 등을 포함한 비자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8547 비자 조건은 고용주 한 명과 6 개월로 기간 제한

워홀러는 호주에 머무는 동안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동일한 고용주와 6 개월 이상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관련 기관의 허가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한 고용주와의 작업이 6 개월로 제한됩니다.

보건, 노인 요양, 또는 농업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워홀러는 예상치 못한 예외적인 상황인 경우에는 동일한 고용주와 6 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워홀러가 6 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다른 상황에는, 해당 작업장의 위치가 포함됩니다.

- 다른 지역들과 동일 위치 작업 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지 않음.
- 호주 전역의 축산 및 식물 재배 분야
- 호주 북부의 특정 산업
- 산불 복구 노력 지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같은 고용주와 6 개월 이상 일하려면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COVID-19 에 관해서 중요치 않은 부문의 근로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호주에서 3 개월 또는 6 개월의 일을 완료한 경우에는 2 차 또는 3 차의 워홀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정 작업의 조건](#)를 참조하세요.

COVID-19 로 인해 2 차 또는 3 차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3 개월 또는 6 개월의 지정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으며, — 중요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합법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나이 제한, 영어 능력, 건강, 성격 등을 포함한 비자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8547 비자 조건, 고용주 한 명과 6 개월로 기간 제한

워홀러는 호주에 머무는 동안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동일한 고용주와 6 개월 이상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관련 기관의 허가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한 고용주와의 작업이 6 개월로 제한됩니다.

워홀러가 6 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상황으로 다음 해당 작업장의 위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역들과 동일 위치 작업 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지 않음.
- 호주 전역의 축산 및 식물 재배 분야
- 호주 북부의 특정 산업
- 산불 복구 노력 지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같은 고용주와 6 개월 이상 일하려면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혹은 태평양 근로제(Pacific Labour Scheme) 관련 참여자

태평양 근로제 서브클래스 403 비자 소지자

근로자와 고용주가 외교 및 통상부의 지원을 받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태평양 근로제 서브클래스 403 비자](#)를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취득하면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또는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하면서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서브클래스 403 비자 소지자

비자가 연장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COVID-19 에 대응해서 중요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새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임시 활동 \(서브클래스 408 호주 정부 승인 협정 \(AGEE\) 관련\)](#) 비자를 취득이 가능합니다.

- 곧 비자가 만료됨
- 비자가 이미 만료되었음
- 호주 출국이 불가능함
- 보건, 노인 요양 또는 농업과 같은 중요한 분야 종사자

이 비자를 취득하면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또는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하면서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과 태평양 근로제는 관련 고용주들과 함께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으로 이월되어 농업 분야와의 협력관계를 계속해 갈 것입니다.

비자 조건: 8503 (추가 체류 불가), 8577 (고용주 변경)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또는 태평양 근로제의 서브클래스 403 비자의 경우, 8577 은 내무부가 따로 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는 한, 보통 스폰서/승인된 고용주한 명에 한해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OVID-19 기간 동안에는 스폰서/승인된 고용주 간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스폰서/승인된 고용주 사이에서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는 다음 연락처로 연락해야 합니다

- 교육, 기술 및 고용부 (계절 근로자의 경우)
- 외교통상부 (태평양 근로제의 경우)

이러한 한시적 제도 하에서 고용주들은 여전히 모든 호주의 관련 직장법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는 계속해서 다른 모든 직원들과 마찬가지로의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COVID-19 기간 동안, 계절 근로자인 서브클래스 403 소지자는 근로자의 비자 조건인 8503(추가 체류 금지)에서 자동 면제되고 a [임시 활동 \(서브클래스 408 호주 정부 승인 협정 \(AGEE\) 관련\)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503 조건의 면제는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 범주 비자 소지자

뉴질랜드와 호주 사람들이 서로의 나라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브릿징 비자 A, B, C 소지자

브릿징 비자 A, B, C 는 현재 비자가 만료된 후 새로운 비자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호주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취업 권리

각 브릿징 비자의 조건에 따라 호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확인처:

- [VEVO](#) 서비스 이용. 혹은,
- 본인의 [ImmiAccount](#) 를 통해 본인의 비자 조건 확인.

재정 상황이 어렵고 자신의 브릿징 비자 조건 때문에 일할 수 없거나 일하는데 제약이 있다면, 일할 수 있는 [브릿징 비자 A](#)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본인이 처해있는 어려운 재정 상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한 조건에는 맞지 않으나 브릿징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이전의 브릿징 비자와 동일한 조건을 가진 새 브릿징 비자를 받게 됩니다.

다음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새 브릿징 비자를 발급받지 못합니다

- 원래 비자 신청 시 내려진 결정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신청했기 때문에 현재의 브릿징 비자 A 를 발급 받은 경우. 혹은,
- 보호 비자를 신청한 경우

참조: [신청 방법](#).

브릿징 비자 만료시

비자 만료일을 넘기고 호주에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또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브릿징 비자 E 소지자

이 임시 비자는 다음 기간 동안에 호주에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 떠날 준비를 하는 기간
- 이민 문제 마무리

- 출입국 관리국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취업 권리

각 브릿징 비자의 조건에 따라 호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확인처:

- [VEVO](#) 서비스 이용. 혹은,
- 본인의 [ImmiAccount](#) 를 통해 본인의 비자 조건 확인.

브릿징 비자 만료시

비자 만료일을 넘기고 호주에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또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 해결 서비스

[자격 해결 서비스 \(Status Resolution Service / SRS\)](#) 프로그램은 임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없이 호주에 거주
- 불법적으로 해상을 통해 도착 (IMA)했으며 유효한 TPV (Temporary Protection Visa, 임시 보호 비자) 또는 SHEV (Safe Haven Enterprise Visa, 안전 피난처 비자) 신청서 제출
- IMA 는 아니지만 유효한 보호 비자 신청서를 제출
- 브릿징 비자 E (BVE) 소지자
- 출입국 문제 해결 능력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장애에 직면해 있는 경우

만료된 비자

만료후 28 일 이내

비자가 이미 만료되었으면 즉시 [브릿징 비자 E \(BVE\)](#)를 신청하고 적법성을 갖추십시오. BVE 는 호주 출국을 준비 하는 동안 합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기 비자 입니다.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를 원하면,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비자 옵션이 결정 되고 합법적으로 있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 지가 달라집니다. 비자 만료가 얼마나 오래 전이었는지에 따라 , 호주에 있는 동안 추가 비자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COVID-19 로 인해 일부 비자 신청 절차 및 관련 서비스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기존의 서비스(예: 신체 검사 및 생체 인식 수집)이 심각하게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신청자들에게는 절차를 완료하고 요청드린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비자 만료후 28 일 이상이 지난 경우

비자 만료후 28 일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자격 해결 서비스 \(Status Resolution Service / SRS\)](#) 에 연락을 취해 도움을 얻고, 출입국 자격 문제를 해결하세요.